

傘下支部動靑

경기도가

▲약용작물 시험장 방문

시흥시 28일 10시 30분경 경기도농업기술원 약용작물시험장 방문

경기도농업기술원 약용작물시험장 방문을 위하여 경기도농업기술원 약용작물시험장 방문을 위하여 경기도농업기술원 약용작물시험장 방문을 위하여

▲경기도 포천군 영농회 4차 총회

경기도 포천군 영농회 4차 총회

경기도 포천군 영농회 4차 총회

경기도 포천군 영농회 4차 총회

경기도 포천군 영농회 4차 총회



◇ 약용작물 시험장 방문

▲전라북도 고창시도소 생약간담회

전라북도 고창시도소 생약간담회

전라북도 고창시도소 생약간담회

전라북도 고창시도소 생약간담회

전라북도 고창시도소 생약간담회

전라북도 고창시도소 생약간담회

산하지부

▲전라북도 지부회의

전라북도 지부회의

전라북도 지부회의

전라북도 지부회의

전라북도 지부회의

전라북도 지부회의

전라북도 지부회의

전라북도 지부회의

전라북도 지부회의

▲경기도가 평군생약재배

경기도가 평군생약재배

경기도가 평군생약재배

경기도가 평군생약재배

경기도가 평군생약재배

경기도가 평군생약재배

경기도가 평군생약재배

경기도가 평군생약재배

경기도가 평군생약재배

경기도가 평군생약재배

경기도가 평군생약재배

경기도가 평군생약재배

경기도가 평군생약재배

그동안 각 지부 산하에서 한약재 절단판매 행위에 대한 질의가 빈번하여 최근 보건사회부장관 질의 회신을 다음과 같이 기재 홍보하니 참조바랍니다. (이 자료는 1993년 4월2일 충북제천시 강대석씨가 보건사회부에 질의한 절단판매 행위에 대한 회신입니다.)

한약재 절단판매행위에 대한 질의회신

1. 귀하께서 '93. 4. 1자 우리부에 접수한 한약재 절단판매행위에 대한 질의회신입니다.
2. 한약재는 사용목적에 따라 의약품과 식품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의약학적용도로 사용하고자 한약재를 가공하고자할 경우에는 약사관계법령에 의거 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식품등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약재를 가공할 경우에는 약사법상 허가를 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다만, 이 경우에는 약사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기, 포장 또는 첨부서류에 의학적 효능·효과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건사회부장관



◇ 경기도 포천군 영농회원 단합대회

▲경기도 지부회의

경기도 지부회의

경기도 지부회의

경기도 지부회의

경기도 지부회의

경기도 지부회의

경기도 지부회의

경기도 지부회의

경기도 지부회의

경기도 지부회의

경기도 지부회의